

2023년 제주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8조에 의하여 『2023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』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4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1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소를 둔 제주산 수산물 수출 관련 수협 및 수산물 가공 업·단체
 - 도내 수산업협동조합
 - 수산물 가공업체 (영어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, 어업경영체, 수산물가공업 신고자)
 - (사)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, (사)제주수산물수출협회 등

▶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

- 설립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,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 - ※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의 보조금은 지원 제외(단, 법 제17조 및 조례에 따라 공익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)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
▶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

2. 추진 기본방향

- 기존 수출 품목에 대한 해외 판로확대(해외 시장 입점 등)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신규 품목* 대상 전략적 마케팅 추진
 - * 수출 가능성이 있는 신규 품목 : 국제수산물전시회 등을 통하여 해외바이어와 수출(진행) 계약이 이루어진 품목
- 도내 수출 마케팅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의 주도적인 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 기회 부여로 수출 역량 및 전문성 강화

3. 지원 대상 사업

- (사업비) : 560,000천원 (자체재원 500,000 자부담 60,000)
 - *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원액 조정 가능
- (지원형태) : 민간경상사업보조 (보조율 90%)
- (사업기간) : 보조금 교부결정일 ~ 2023. 12. 31.
- (항목별 지원(정산)기준)
- (지원내용 및 사용용도)
 - 제usan 수산물(가공품)*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판촉홍보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장소임차·장치비, 전시품 구입, 홍보 등. 단, 아래 항목별 정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

* 수산물 가공품 : 제usan 수산물이 주원료로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.

항목	세부 지원내용	비고 및 필요서류
임차장치비	○ 행사장소 임차비 ○ 장치설치비(배너, 판넬 등)	-실질발생비용 적용 -계약서 및 영수증
홍보비	○ 매체광고, 홍보물, 판촉물 제작비 등	
시식행사비	○ 비품구입비 ○ 시음/시식 재료 구입비 ○ 판촉요원 고용비(통역포함) ○ 세프/진행요원 인건비	-실질발생비용 적용 - 계약서 및 영수증 - 고용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 사본 (이름, 활동시간, 지급액 포함)
출장비	○ 항공료(이코노미석 기준) ○ 숙박비(공무원여비 기준 적용)	- 실질발생비용 적용 - 계약서 및 영수증
이벤트 홍보비	○ 설문조사, 기념품 제작비 ○ 행사 대행사 계약금	
운송통관비	○ 통관비	

4.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

- 1순위 : 제usan 수산물로 최근 3년간 해외시장에 프로모션 및 입점 실적이 있는 수출 단체·업체
- 2순위 : 제usan 수산물 수출 실적이 우수한 수출 단체·업체
- 3순위 : 제usan 수산물 수출이 저조하지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수출 단체·업체
- 단,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결격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

5.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3. 5. 4(화) ~ 2023. 5. 17.(수) (14일간)
- 접수기간 : 2023. 5. 4(화) ~ 2023. 5. 17.(수) (14일간)
-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행정시 접수 불가)
- 신청방법 : 직접 원본 제출 (접수 마감일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)
 - ※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(www.jeju.go.kr) 입법·고시·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
- 신청서류
 1. <서식 1~4> 보조금 교부신청서,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
 2. 사업자등록증, 최근 3년간 제주산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 증빙서 각 1부.
 3. 신청하는 사업의 사업비 산출 근거(견적서 1부)
 4. 최근 3년간 재무제표(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영장부 사본 등) 1부
 5. <서식5>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 6. <서식6>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 7. <서식7>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 8. 최근 3년간 해외시장 입점 계약서 1부. (실적이 있을 시)

6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-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- 사업자 선정 배점 및 중복 지원·결격 사유 기준
- 결과 통보 : 개별 통보

〈 유 의 사 항 〉

1.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 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☎064-710-32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]

- 운영시기 : 2016. 7. 1 부터
- 운영부서 : 예산담당관실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)
- 신 고 처 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
- 포상금 지급 :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% 범위(최대 1억원)
- 문의사항 : 예산담당관실(☎710-2324) / E-mail(kohee@korea.kr)

※ 구체적인 사항은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참조

[서식1]

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1. 보 조 사 업 명 :

2. 보조사업 신청자

○ 명 칭(성 명) :

○ 소재지(주 소) :

○ 전 화 번 호 :

3.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

○

○

4. 보조사업 소요경비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	보 조 금	자부담	기 타

5. 보조사업 기간(착수 예정일 ~ 완료 예정일)

6. 기타사항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붙 임 : 사업계획서 1부

2023년 월 일

신청자(기관명 및 대표자) :

직인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[서식2]

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신 청 인	단 체 명 (법인명)		비영리단체 (법인)등록번호(선택)			
	소 재 지		(우편번호: -)		회 원 수	명
	대 표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(선택)			
		주 소				
		연 락 처	사무실			
		핸드폰				

신 청 내 용	사 업 명					
	사업내용					
	사업기간	. . . ~ . . .				
	사 업 비	천원		보 조 금	천원(%)	
				자 부 담	천원(%)	
	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(천원)	2020년	2021년		2022년	

첨부서류 1. 단체소개서 1부, 2. 사업계획서 1부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
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
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월 일
신청인 : (직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
- 수집 항목 : 주민(법인)번호, 이름, 연락처(휴대폰번호), 주소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(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)

- 보관·이용기간 :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. 단,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
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☐ (체크)

※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(선택사항) 필요(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)

[서식3]

사 업 계 획 서

☐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내용 :

☐ 경비총액 : 천원(보조율 %)

☐ 보조금액 : 천원

☐ 자부담액 : 천원

☐ 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 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 고

☐ 보조사업의 효과

○

○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
나. 자부담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 : 홍보비, 인쇄비, 강사료, 교통비, 식비, 임차료 등으로 구분
- ③ 금 액 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- 세목 기재방법 : $\text{단가(원)} \times \text{회(명, 부 등)} = \bigcirc \bigcirc \bigcirc \text{천원}$
 - 산출내역(기초)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

[서식4]

단체 소개서

[단체명 :]

주소 및 연 락 처	주 소	(우 123-456)		
	연 락 처	• 전화 : • 홈페이지 : • 팩스 : • E-Mail :		
등록 및 인력현황	등록기관		등 록 일	
	대 표 자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)	• 사무국 직원수 : 명 (사무국장, 행정부장, ..)	
	회 원 수			
설립목적	• 우리 사회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○○ 기틀 마련 ※ 첨부 :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			
단체연혁	• ‘81.11. 8 ○○○ 설립(창립) • ‘88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 • ‘99. 7.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			
예산현황 (당해년도)	• 예산총액 : 천원(보조금 : 천원, 자체수입 : 천원) •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%)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(%), 사업수익(%), 기타(%)			
주요사업 (최근1년)	• “정 관/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” 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			
주요사업 계 획 (당해년도)	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 •			

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, 계좌번호 등)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회계관련 규정 등에 의한 필요한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제주특별자치도 보조(지원금)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, 계좌번호 등)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2023년 월 일

담당자 : 성명

서명

대표자 : 성명

서명

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부터 제40조)

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3. . .

단체명	대표	(서명)
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	직책	성명 (서명)
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	직책	성명 (서명)

[서식7]

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
☐ 지방보조사업자서

단체명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소재지	전화번호

☐ 신청 지방보조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보조사업명	총사업비				사업기간
	계	국고보조금	보조금	자부담	

※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

☐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	보조금교부 자치단체	보조사업명	보조액	정 산 반환액	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

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.

2023.

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

대표

(서명)